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도로관리청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6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시설물 간 상보적(相補的)	
설치에 대한 규정례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08. 05.
3. 회 부 일 : 2024. 08. 0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어 해당 부속물과 시설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어 조화롭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

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적재
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도로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법」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 ----- ----- ----- ----- 이 경우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재 「도로교통법」¹⁾ 및 같은 법 시행령²⁾에 따른 신호기, 신호등,

1)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신호등)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법」³⁾ 및 같은 법 시행령⁴⁾에 따른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등 도로의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3)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결(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 도로의 부속물 및交通安全시설 비교 >

구분	도로의 부속물	交通安全시설
종류	• (지원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등 • (안전시설) 과속방지턱, 중앙분리대 등 • (도로관리시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 관리 사업소 등 • (교통관리시설) 도로표지, 교통량 측정시설 등 • (부대시설)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등	• (신호기) 차량 신호등, 보행 신호등, 자전거 신호등 등 • (안전표지) 정차·주차금지표지, 일방통행표지, 노면표시 등
관리 주체	•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시장등), 고속도로 관리자⁵⁾
근거 법령	• 「도로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도로교통법」 • 「交通安全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이에 개정안은交通安全시설과 도로부속물이 서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交通安全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법」 제23조⁶⁾의 구분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긍정적임.

5) 관리주체

- 시장등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 가능
- 고속도로 관리자가交通安全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交通安全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

6)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다만, 경찰청은 이미 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⁷⁾에서 두 시설물을 상보적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으며, 실무상 교통안전시설 심의시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도로관리청과의 사전협의를 법률에 의무화할 경우, 교통안전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협의 지연이나 결렬로 인해 설치되지 못하면 오히려 교통안전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44

7) 다음 페이지의 참고 자료 참조.

참고자료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시설물 간 상보적(相補的) 설치에 대한 규정례

< 과속방지턱편 >

3. 설치장소

가.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 4)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생 략) ...

< 시선유도시설편 >

4. 2 설치장소

표지병의 설치장소는 도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전용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